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72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4월 26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법령의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‘사용중지’ 나 ‘사용허가 취소’ 를 「시설물안전법」 과 「건축물관리법」 에 따른 시설물의 ‘사용제한·사용금지,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’ 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법령의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‘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’ 를 ‘사용제한·사용금지,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’ 로 수정함(안 제20조의4 제4항).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0조의4 제4항 중 “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” 를 “경우에는 사용제한·사용금지,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” 로 한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0조의4(사용허가 등) ① ~ ③ (생략) <신설>	제20조의4(사용허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<u>경우 사용</u> 을 <u>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</u> 를 할 수 있다.	제20조의4(사용허가 등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<u>경우에는 사용제한·사용금지,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</u> 를 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제한·사용금지,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4(사용허가 등) ① ~ ③ (생 략)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div>	제20조의4(사용허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제한 · 사용금지,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.</u>